〔붙임 1〕

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규정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문화비축기지(문화공원, 문화마당)의 공간적 특성과 가치를 보존하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협치형 문화공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장소 사용에 관한 운영 기준 및 지침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 정의) ① '장소사용'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, 공연, 교육, 학술, 문화·예술, 국제회의 등의 개최를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문화비축기지의 공간과 부대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② '장소사용자'라 함은 제①항의 장소사용 절차를 통해 문화비축기지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③ '자체 행사'라 함은 문화비축기지 자체 혹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연, 전시, 연구, 교육, 각종 행사 등을 말한다.

제 3 조(장소사용 범위) ① 서울시장(문화비축기지)은 문화비축기지의 자체 행사 및 공간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문화비축기지 공간 사용을 승인 할 수 있다.
1. 문화비축기지의 미션 및 비전과 부합하는 행사
2. 서울시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
3. 생태문화, 지속가능성, 조경, 산림 등 관련 행사
4. 기타 시장(문화비축기지)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

② 장소사용 할 수 있는 문화비축기지 공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문화마당(T0)
2. 문화공원(T1, T2, T4, T6)
3. 기타 서울시장(문화비축기지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

③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, 장비(이하 '부대시설'이라 한다) 등의 세부품목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4 조(장소사용 종류) ① **장소사용**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고, **정기접수는 차기년도 자체행사의 일정을 확정한 후 유휴 기간 동안의 공간에 대한 장소사용**을 말하며, **수시접수는 정기 장소사용 이후 당해 연도에 한하여 잔여 유휴 공간이 있을 때** 이루어지는 장소사용을 말한다.
② 장소사용은 사용목적에 따라 본 행사 장소사용과 준비(무대설치, 연습) 및 철수 장소사용 등으로 구분한다.

제 5 조(장소사용 신청) ① 문화비축기지 공간을 장소사용 하고자 하는 자(이하 '신청인'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 **행사계획서(행사장소, 배치도, 전력사용, 코스, 주차, 청소, 안전대책 등 포함하여 기재)**
2. **시설물설치내역 및 안전관리 계획서(원상복구 계획 포함)**
3. **이용 준수사항 동의서**(서명 없는 것은 무효)

② 신청인은 정기장소사용의 경우에는 문화비축기지가 지정하는 일정기간 내에, 수시장소사용의 경우에는 **사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제①항의 공간의 장소사용 신청서(위 1~3호 포함)를 제출**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장소사용 승인) ① 서울시장(문화비축기지)은 제5조에 따라 장소사용 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, **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장소사용 심의위원회**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개최하고, 이를 심사하여,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서울시장(문화비축기지)은 장소사용을 결정할 때에는 **조건을 부가하거나, 신청인과 협의하여 장소사용 기간 및 내용을 조정**할 수 있다.

제 7 조(장소사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장소사용의 공정성과 장소사용신청의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·운영하며, 수시장소사용의 경우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내부심의로 진행한다.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.
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, 서부공원녹지사업소, 문화비축기지, 관련분야 전문가, 관할 경찰서, 소방서 및 유관 기관장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④ 외부 심의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⑤ 장소사용 가부는 심의위원회 **위원의 과반수이상 참석 및 참석 위원 과반수이상 찬성**으로 결정한다.
⑥ 수시접수는 내부 심의로 대체하여 운영하며, 내부심의는 문화비축기지관리소장과 관련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다.

제8 조(장소사용의 우선순위) 장소사용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제3조 제①항 각 호에 따라, 문화비축기지의 정책, 공연, 전시나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장소사용 우선순위를 결정한다.

제 9 조(장소사용료 산정) ① 장소사용료는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등을 고려하여 기본 장소사용료를 **책정**한다.
② **2시간 초과시,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할인한다.**

제 10 조(장소사용료 면제, 조정) ① 서울시장(문화비축기지)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**장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**할 수 있다.

1. **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,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면제할 수 있다.**
2. **문화비축기지 주최, 공동주최 또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적극 유치하거나 후원하는 문화, 예술, 생활예술, 생태문화, 축제 등의 행사는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.**
3. **장애인, 다문화 가정, 소외계층 등 관련 행사는 감면할 수 있다.**
4. **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한 사항 및 시장(문화비축기지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.**

제 11 조(장소사용료의 납부) ① 제6조에 따라 장소사용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장소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**10일 이내에 문화비축기지와 장소사용 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체결 이후 사용예정일의 30일 전까지, 수시장소사용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납부**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 의해 장소사용의 승인일이 사용예정일의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장소사용료 전액을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장소사용 변경에 따른 추가 장소사용료는 **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**하여야 한다.

③ 장소사용자는 사전납부시 전체 매출의 부가세 10%를 반영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장소사용 내용의 변경) ① 장소사용자는 승인받은 행사 내용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. 단, 장소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
② 장소사용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, 상당한 사유와 함께 변경 요청일이 장소사용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, 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장소사용자는 행사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장소사용 변경(취소)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3 조(장소사용료의 반환) ① 제11조에 따라 장소사용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거나, 제14조 제②항 각 호의 사유로 장소사용의 취소나 행사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장소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.

② 서울시장(문화비축기지)은 제①항에도 불구하고, 장소사용자가 제12조 제②항에 따라 사용예정일의 25일 전까지 장소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, 행사 취소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고, 서울시장(문화비축기지)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, 납부된 장소사용료의 100%를 반환할 수 있다.

③ 서울시장(문화비축기지)은 제14조 제②항 제5호의 사유로 장소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장소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.

④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

하는 경우 반환 받을 수 있다.

제 14 조(장소사용의 신청제한, 취소 등) ① 서울시장(문화비축기지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, 장소사용 신청을 제한한다.

1. **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규정을 위반**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2. 문화비축기지의 **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,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상 부적정한 행사**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3. **특정 종교의 행사 또는 정치적 목적**의 행사인 경우
4. **상품 판매 등 영업행위를 목적**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
5. 기타 **공익성을 심하게 위협하거나,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** 행사
6. 제②항 제1호에서 제4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내동안 장소사용신청 자격 정지

② 서울시장(문화비축기지)은 장소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취소하거나 해당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장소사용 **신청 내용과 상이한 행사**를 할 때
2. 장소사용 **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**한 때
3. 제11조 제①항에 따른 **장소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**
4. 장소사용자가 임의로 문화비축기지의 **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**하였을 때
5.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장소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
제 15조(장소사용자 준수사항) 장소사용자는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장소사용 **목적에 맞는** 시설물의 사용
2. 장소사용 **기간 및 장소사용 받은 범위 내**의 공간 사용
3. 장소사용 기간 중 **시설물의 안전·관리**에 유의

제 16 조(행사 등 진행 유의사항) ① 장소사용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**행사예정일 30일 이전까지 행사 계획과 관련한 설치 계획, 조명, 음향, 일정 등이 포함된 '설치 계획서'를 제출**하여, 사전 협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 **수시 장소사용의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사전협의**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시설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, 장소사용자는 물론 설치 제작자가 설치 방안 등 제반사항을 문화비축기지와 협의하여야 하며, 문화비축기지는 검토 결과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다. 특히 장소사용자는 **공간의 조명 등 설비를 이동 혹은 제거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와 무대장치의 이동,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문화비축기지의 승인을 얻어야** 한다.

③ 장소사용자는 승인 받은 내용 이외의 **별도 부대행사(정치, 특정 종교행사, 상품판매행위 등)를 할 수 없다.**
④ 서울시장(문화비축기지)은 장소사용자가 행사시에 문화비축기지 소속의 기술요원 외에 추가로 기술요원을 필요로 할 경우, 장소사용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직접 고용하고,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장소사용자가 부담한다.
⑤ 장소사용자는 전시, 공연, 기타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운영요원을 행사 장소에 배치하고,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장소사용자가 부담하며, 행사관련 파손, 분실, 안전, 청소 등의 책임은 장소사용자에 있다.
⑥ 외부반입 장비가 문화비축기지 내 **일반전력 이상의 전력을 요할 경우, 별도의 발전차량 등 장소사용자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**하여 이용해야 한다.
⑦ 문화비축기지(문화공원, 문화마당)내 **허가받은 분전함을 사용하고 분전함이 없을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의 발전기, 발전차량 사용에 대한 허가를 득한 후 이용**하여야 한다.
⑧ 허가받지 않은 **취사(조리행위 포함), 야영행위, 판매행위 등을 금지하며, 공익적·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며 시민활동을 촉진하는 행사의 경우, 심의를 통해 적정여부 판단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**
⑨ 장소사용자는 **문화비축기지의 장소사용을 위한 홍보물(포스터, 현수막, 기타 구조물 등)을 부착 및 비치하고자 할 경우 문화비축기지와 협의 후 허가받은 공간에 부착 및 비치** 하여야 한다.
⑩ 장소사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에 적합한 행사의 **사전준비 및 공간운영(공간물품 이동, 공간기획 등)과 철수**를 진행해야 한다.

제 17 조(공간 사용시간 및 주차 등) ① 매주 월요일은 문화비축기지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소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는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② **문화비축기지의 장소사용 시간은 문화공원은 10:00~18:00까지, 문화마당은 09:00~22:00이며, 식사시간(점심, 저녁 각 1시간)은 제외**한다.
③ **사용시간 외 행사시간은 문화비축기지와 사전에 협의**하여 정한다.
④ 장소사용자는 문화비축기지 자체의 주요행사 일정이 긴급히 편성되어, 서울시장(문화비축기지)으로부터 장소사용 일정 조정을 요청받았을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⑤ 행사장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문화비축기지(문화공원, 문화마당) 진입시에는 행사전일까지 행사차량 협의를 완료하고 **허가받은 차량 외에는 문화비축기지 내부 출입을 할 수 없으며, 물건 하차 후 즉시 출차**하여야 한다.
⑥ 행사에 필요한 주차료는 장소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
제 18 조(손해배상 및 원상 복구) ① 장소사용자는 문화비축기지 **공간 또는 장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장소사용자 부담으로 원상으로 회복**하여야 한다.
② 장소사용자는 장소사용을 위한 행사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를 장소사용 **기간 내에 철수하고 장소사용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**를 해야 한다.
③ 문화비축기지는 이용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상태(우천 시, 잠재적 위험요소 등)를 고지를 받았을 경우,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시 발생한 문제에 책임소재는 장소이용자에게 있다.

제 19 조(관리의무 및 제3자 손해배상) ① 장소사용을 위한 행사와 관련, **장소사용 준비에서 철거기간까지 반입한 물품 및 설비의 관리책임은 장소사용자에게 있다.**
② 장소사용자는 장소사용을 위한 행사과정에서 발생된 **폐기물의 처리에 만전**을 기해야 하며,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③ 문화비축기지는 장소사용기간 중(행사준비 및 마무리 기간 포함) 행사와 관련하여 문화비축기지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,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④ 장소사용자는 문화비축기지가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 장소사용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문화비축기지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. 이 경우 장소사용자는 문화비축기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.

제 20 조(규정의 해석)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은 문화비축기지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.